

##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2. ~ 10. 16.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mailto: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21호
----------	--------

발의연월일 : 2018. 10. 4.

발 의 자 : 이현재, 허유인

## 1. 제정이유

- 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 통일교육 사업수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통일 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정함(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4.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에 관한 의식 제고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활용
5.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협력·육성 및 지원 방안
6.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일교육 사업) 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 ①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47호
----------	--------

발의연월일 : 2018. 10. 8.

발 의 자 : 박종호, 이영란,  
박혜정, 이현재

## 1. 개정이유

-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 시설로 등록하지 못한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미등록 경로당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 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등 지원
- 시설 통합 운영 지원에 대한 예외 단서 조항 마련(안 제6조제3항)
  - (현행) 마을단위 당 1개소 지원 → (변경)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리 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시설운영 지원)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② 기존 마을회관, 농업인건강관리실 용도로 설치된 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당 1개의 시설로 통합운영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단서 신설&gt;</p>	<p>제6조(시설운영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 ----- ----- -----.</p> <p>다만, 거리 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p>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 제2항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 운영비, 한시 냉·난방비 등 지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56,600	-31,320	-31,320	-31,320	-31,320	-31,32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56,600	31,320	31,320	31,320	31,320	31,32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156,600	31,320	31,320	31,320	31,320	31,320
시 비	156,600	31,320	31,320	31,320	31,320	31,32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등
- 사업기간 : 매년
- 산출액 : 31,320천원
- 산출근거
  - 경로당 운영비(50인 미만) : 13,320천원
    - 산출 : 111,000원 × 12월 × 10개소 = 13,320,000원
  - 한시 난방비(11~12월, 1~3월 / 5개월) : 16,000천원
    - 산출 : 320,000원 × 5월 × 10개소 = 16,000,000원
  - 한시 냉방비(7~8월 / 2개월) : 2,000천원
    - 산출 : 100,000원 × 2월 × 10개소 = 2,0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49호
----------	--------

- 발의연월일 : 2018. 10. 8.
- 발 의 자 : 나안수, 남정옥

## 1. 개정이유

-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로 말(馬)에 대한 사육을 인정하여 농촌 관광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축종 추가 : 5마리 이하의 말(안 제2조 제2호라목)

##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4.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양(염소)과”를 “양(염소), 5마리 이하의 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 2. (생 략)</p> <p>가. ~ 다. (생 략)</p> <p>라. 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돼지· 개·사슴·<u>양(염소)</u>과 1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10 마리 이하로 한다.</p> <p>마. (생 략)</p> <p>3. (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 <u>양(염소), 5마리 이하의 말,</u> -- ----- -----.</p> <p>마.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23호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출일시 : 2018. 10. 5.

## 1. 제정이유

-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시의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남북교류협력사업 범위, 제정지원 등(안 제1조~제3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안 제4조~제12조)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있음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임명권자 변경(안 제5조제2항)
  - (당초) 부시장 ⇒ (수정) 시장
-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조례안에 삽입
  - (안 제2조제2항)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추가) 3. 생물 서식지 보전, 생태관광 등 생물권보전지역 및 정원문화 교류사업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8. 29. ~ 9. 1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28.(여성가족과-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8. 24.(총무과-1844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8. 28.(전략기획과-935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8. 29.(순천시 공고 제2018-1415호)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순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생물 서식지 보전, 생태관광 등 생물권보전지역 및 정원문화 교류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2조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순천시의회 의원
  4.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 상·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장은 제2조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지원
-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지원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지원 등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9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9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9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9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2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 체계 정비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규정 삭제  
※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사고발생 보고체계 정비(안 제22조)
  - (현행) 소방방재청장 ⇒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규정 삭제(안 제7조)
  - 과태료 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준용규정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8. 31. ~ 9.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21.(여성가족과-3011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8. 22.(전략기획과-907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8. 31.(순천시 공고 제2018-1387호)

#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구역의 설정·게시)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7조(위험구역의 설정·게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2조(상황보고) ①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2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및 추가 규제 등에 해당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 삭제
  - 제8조(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제9조(임금지급약정서 제출의무), 제12조(임금지급계획서 제출의무), 제13조(대가지급 게시의무), 제19조(자료제출 협조의무)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 정비
- 상위법령과 다른 추가적 내용 규정 삭제
  - 제15조(대가의 직접지급 추가규정), 제28조(계약특수조건 반영)
- 제8조(근로계약서 작성) 삭제 등 조례 전부 정비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건설산업기본법」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9. 12. ~ 10. 1.)
- 건설과, 하수도과 :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9항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 외에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 등으로 확대 필요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 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 등으로 확대함이 타당

##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9. 12.(여성가족과-3298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9. 10.(전략기획과-995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9. 12.(순천시 공고 제2018-1498호)

#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 ⑧ “관급공사”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공사로써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를 말한다.
-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장 고용안정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확대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5.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7.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 제3장 임금 등 보호

제9조(임금지불에 대한 약속)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을 약속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1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범시민명예감시관 등

제12조(범시민명예감시관제도) ① 시장은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명 이내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4조의 사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업체 임원 제외)

3. 건설산업 관련 협회나 건설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람
- ③ 시장은 범시민명예감시관에게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등)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 등에 따른 체불임금 등과 불공정하도급의 행위 제보
2.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3.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4. 담당공무원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공동단속·조사에 참여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4조(임기 등) ①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시민명예감시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범시민명예감시관의 해촉을 해당 단체가 건의한 경우
2.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제5장 체불임금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제15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순천시 회계과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순천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신고
  - 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 순천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6조(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7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순천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한다.

제18조(평가 및 실적보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2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명칭 조항 변경과 전자우편 및 사이버 교육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하고
-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정된 관련법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의 명칭, 용어 조항 변경 (제2조 제4호, 제2조 제6호, 제13조 2항)
-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및 사이버 교육 관련 조항 삭제 (제3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 홈페이지 설치·운영시 사전에 정보화부서와 협의 신설(제3조 제5항)
-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원고료 등 지급 근거 마련 (제16조)
- 마일리지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규정 삭제 (제16조 제2항)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6. 12. ~ 7. 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6. 14.(여성가족과-220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6. 12.(홍보전선과-1943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6. 14.(전략기획과-628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6. 12.(순천시 공고 제2018-1010호)

#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를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로 하고, 같은조에 제10호와 제11호,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셜미디어”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11. “홍보기자단”이란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의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SNS 서포터즈”란 순천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중 “운영”을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홍보”를 “홍보 및 정보교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을 “개발 및 유지보수는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와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⑤ 시 해당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제9조제2항 중 “한다” 를 “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을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본문 중 “시장은 적극적인” 을 “시장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 적극적인” 으로, “이벤트” 를 “이벤트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인터넷시스템” 을 “홈페이지”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소통, 공감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제16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시정 및 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기자단, SNS 서포터즈 등 운영

제16조제4항 중 “제2항과 관련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UMS 서비스 등의 비용과 제3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을 “제3항의 운영을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등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을 “개발 및 유지보수를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으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인터넷 민원“이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생략)</p> <p>6. “개인정보“란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p> <p>7. ~ 8. (생략)</p> <p>9. “주관부서“란 <u>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u>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 -----.</p> <p>5. (현행과 같음)</p> <p>6. ----- 「<u>개인정보 보호법</u>」 제2조제1호 ----- -----.</p> <p>7. ~ 8. (현행과 같음)</p> <p>9. ----- <u>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u> -----.</p> <p>10. “<u>소셜미디어</u>“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과 같은 <u>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라 한다)</u>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p> <p>11. “<u>홍보기자단</u>”이란 <u>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의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u>을 말한다.</p> <p>12. “<u>SNS 서포터즈</u>”란 <u>순천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u></p>





현 행	개 정 안
<p>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시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 목적·횟수 및 시정 기여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하고 그 누적된 마일리지로 통합메시징시스템[Unified Messaging System](이하 “UMS“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인터넷시스템의 개설·개편 등을 기념할 경우</p> <p>4. 홈페이지 및 사이버 교육 운영 등을 활성화할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5. (생략)</p> <p>④ 시장은 제2항과 관련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UMS 서비스 등의 비용과 제3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③ 시장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 적극적인 ----- 이벤트 등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홈페이지-----</p> <p>4. 소통, 공감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p> <p>5. 시정 및 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기자단, SNS 서포터즈 등 운영</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④ --- 제3항의 운영을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등을 -----.</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6조 제4항(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 :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정홍보 등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홍보기자단, SNS서포터즈 등)에 대한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109,400	-62,200	-7,200	-10,000	-15,000	-15,000
세입(a)						
세출(b)	62,200	7,200	10,000	15,000	15,000	15,000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참여자 운영	62,200	7,200	10,000	15,000	15,000	15,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62,200	7,200	10,000	15,000	15,000	15,000
국 비	-	-	-	-	-	-
도 비						
시 비	62,200	7,200	10,000	15,000	15,000	15,00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참여자 운영

- 사업기간 : 2018년 ~
- 산 출 액(2018년) : 7,200천원
- 산출근거(2018년)
  -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홍보기자단, SNS 서포터즈 운영
    - 원고료 지급 등 : 30,000원×20명×12개월 =7,2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시 홍보전산과      과장      최신철 (☎ 749-5477)  
   전산팀장    이은주 (☎ 749-5717)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27호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출일시 : 2018. 10. 5.

## 1. 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2. 주요내용

-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
  -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
-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7조)
  -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 50억 원,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원, 마을숙원사업비, 주민 유급감시요원 위촉 4명, 지역주민 우선채용 20명 내외, 입지지역 포상금 3천만 원

## 3. 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 제2조(정의)
  - 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 시행령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 시행령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별첨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8. 31. ~ 9.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8. 27.(자원순환과-2213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28.(여성가족과-3093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8. 28.(전략기획과-938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8. 31.(순천시 공고 제2018-1418호)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

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 영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그 밖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의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마을별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을별 공동사업이 곤란한 경우 그 지역 여건과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년도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사업(현금, 물품 제외)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 (제6조 및 제7조 제1항 관련)

구분		지원규모	지원방법	비고
주민지원 기금	출연금	5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착공연도 50%(25억 원)</li> <li>• 사용 개시연도 50%(25억 원)</li> </ul>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매년 지원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따라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사용 개시연도부터</li> <li>• 시설사용 종료 시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li> </ul>	
주민지원 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개시 전까지 설치</li> </ul>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착공연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 지원</li> </ul>	
	마을숙원사업비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개선, 도로개설, 상수도 설치 등 우선 지원</li> </ul>	
	주민 유급 감시요원위촉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사용 개시일로부터 시설사용 종료 시까지</li> </ul>	
	지역주민 우선채용	2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을 시설운영 요원으로 우선채용 고용증대 (단순 노무직 등)</li> </ul>	
	입지지역 포상금	3천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입지확정 후 지급</li> </ul>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비,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시공비
- 조례안 관련조문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
  -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의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 을 말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입지선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5년으로 함
- 매립시설은 1,300천㎡, 소각시설 200톤/일, 재활용시설은 60톤/일 규모로 추계하여 산정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91,350	△14,602	△20,152	△17,652	△17,652	△21,292
세입(a)	61,565	8,317	13,217	13,217	13,217	13,597
세출(b)	152,915	22,919	33,369	30,869	30,869	34,889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148,575	22,919	32,869	30,369	30,369	32,049
국 비	37,980	3,600	8,500	8,500	8,500	8,880
도 비						
시 비	110,595	19,319	24,369	21,869	21,869	23,169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설계용역비 및 시공비,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획 사업비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년간)

○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61,565	8,317	13,217	13,217	13,217	13,597
종량제 봉투 등 판매금액	22,250	4,450	4,450	4,450	4,450	4,450
재활용품 판매금액	1,335	267	267	267	267	267
국고 지원	37,980	3,600	8,500	8,500	8,500	8,880

○ 세출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52,915	22,919	33,369	30,869	30,869	34,889	
사업비 (136,600)	매립시설	39,800	4,000	10,000	10,000	10,000	5,800
	소각시설	69,400	6,300	15,000	15,000	15,000	18,100
	재활용	17,400	1,450	3,500	3,500	3,500	5,450
	토지매입	10,000	10,000	0	0	0	0
주민지원 계획 (16,315)	출연금	5,000	0	2,500	0	0	2,500
	징수 수수료	595	119	119	119	119	119
	편익시설	5,720	570	1,300	1,300	1,300	1,250
	지역개발비	4,000	400	900	900	900	900
	숙원사업비	250	50	50	50	50	50
	주민 채용	720	0	0	0	0	720
포상금	30	30	0	0	0	0	

○ 산출근거 세부내역

### 【세입】

- 종량제봉투 등 판매금액 : 4,450백만원/년 × 5년 = 22,250백만원
  - 2017년 기준 : 종량제 2,764백만원, 대형 369백만원, 음식물 1,318백만원
- 재활용품 판매금액 : 267백만원/년 × 5년 = 1,335백만원
- 국고 지원 : 37,980백만원
  - 매립시설 : 39,800백만원 × 30% = 11,940백만원
  - 소각시설 : 63,200백만원 × 30% = 18,960백만원
  - 재활용시설 : 17,400백만원 × 30% = 5,220백만원



#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848호
----------	--------

발의연월일 : 2018. 10. 8.

발 의 자 : 박재원 의원

## 1. 개정이유

- 순천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이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와 같이 조정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 특별법 인용 문구 삭제(안 제1조)
-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 확대(안 제2조제1호)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 → (개정) 19세 이상 39세 이하
- 연령 조정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 신설(안 제2조의2)
- 위원회 구성에 순천시의회 의원 포함(안 제5조제5항)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청년일자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대표
5.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생략)</p> <p>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 6. (생략)</p> <p>&lt; 신설 &gt;</p> <p>제5조(위원회) ① ~ ④ (생략)</p> <p>⑤ <u>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순천시 청년일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적용범위) <u>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u></p> <p>제5조(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u></p> <p>2. <u>순천시의회 의원 2명</u></p> <p>3. <u>청년일자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4. <u>청년대표</u></p> <p>5. <u>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p>

## 참고 1

## 관련법령 등 자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 청년고용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501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 9. 13, 일부개정]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09. 12. 15.]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17. 10. 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794호, 2017. 10. 3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참고 2****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자치단체명	청년의 정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비고
경기도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경상남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경상남도 김해시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전라남도 곡성군	만 15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	
전라남도 영광군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을 정의하고, 단서 조항에 의해 개별 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28호
----------	--------

- 제출자 : 순천시 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제정이유

- 인건비 상승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경제활성화 및 인력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 자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 기금의 설치·구성 및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 등
- 용자대상 사업·조건, 용자계획의 공고, 용자신청, 용자상환 등

## 3. 제정조례안 : 별 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 없음

## 6. 예산상황

-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폐지 후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기금조성하고
- 연 100억 ~ 300억원의 용자추천을 위한 이자지원액 확보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9. 10. ~ 2018. 9. 30.) : 의견제출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21.(여성가족과-3011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8. 13.(투자유치과-500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9. 5.(전략기획과-973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9. 10.(순천시공고 제2018-1461호)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자보전금”이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등
- ②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능은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용자대상 사업 등

**제10조(용자대상 사업)** 시장은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용자조건 등)** 용자금액·용자기한·용자금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용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용자 실시 이전에 대상업종과 신청절차 및 용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용자신청)** 용자금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금융기관에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용자추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용자대상업체 및 용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15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 ②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 ③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82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제정이유

- 2004년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완료(2010년) 및 지방채 상환(2016년)으로 동 조례의 목적이 달성됨.

## 2. 주요내용

-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금에 귀속

## 3. 폐지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특별회계조례폐지 후 특별회계 잉여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금에 귀속
-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시설물유지관리(1.5억원/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9. 10. ~ 2018. 9. 30.)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8. 13.(투자유치과-49990)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9. 5.(전략기획과-973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9. 10.(순천시공고 제2018 - 1450호)

##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등)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의 2018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귀속한다.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지역주도 관광정책 추진을 통한 관광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천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지역관광 협의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제8장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신설
  -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광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야 함(안 제26조)
  - (재정지원)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및 제48조의9 제5항에 따른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재정지원 가능(안 제27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불입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9. 12. ~ 10.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9. 11.(여성가족과-3266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9. 3.(관광진흥과-18070)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9. 10.(전략기획과-99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9. 11.(순천시 공고 제2018-1500호)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을 제9장으로 제9장을 제10장으로 하며 제25조 다음에 “제8장 순천시 지역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을 삽입한다.

제26조부터 제32조를 각각 28조부터 제34조로 하고, 제8장 제26조 및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광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관광협의회 재정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삽 입>	제8장 <u>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u>
<신 설>	제26조( <u>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u> ) <u>법 제48조의9에 따라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광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u>
<신 설>	제27조( <u>관광협의회 재정 지원</u>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1. <u>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u> 2. <u>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u> ② <u>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u>
제8장 <u>관광홍보모니터단</u>	제9장 <u>관광홍보모니터단</u>
제26조 (생략)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7조 (생략)	제29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 ~ 제31조 (생략)	제30조 ~ 제33조 (현행 제28조에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9장</u> 보칙</p> <p><u>제32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0장</u> 보칙</p> <p><u>제34조</u> (현행 제32조와 같음)</p>

**【붙임】**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관광협의회 재정 지원(안 제27조)
  - 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광협의회 설립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경비 지원
  - 협의회 운영 인건비 (사무국장 1, 간사 1)
  - 협의회 사무실 운영 경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348,780	-69,756	-69,756	-69,756	-69,756	-69,756
세입(a)	-	-	-	-	-	-
세출(b)	348,780	69,756	69,756	69,756	69,756	69,75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348,780	69,756	69,756	69,756	69,756	69,756
시 비	348,780	69,756	69,756	69,756	69,756	69,756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협의회 인건비
  - ① 사무국장(1명) : 35,000,000원
    - 급여 : 2,500,000원\*1명\*12월 = 30,000,000원
    - 상여금 : 1,250,000원\*4회 = 5,000,000원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순천시민 자긍심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무료입장 추진
  - 시민 방문을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 관광지 홍보
-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 적용

## 2. 주요내용

- “제6조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임의규정 개정 및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무료입장 신설(안 제6조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 적용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민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9. 12. ~ 10.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9. 11.(여성가족과-3266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9. 3.(관광진흥과-18070)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9. 10.(전략기획과-99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9. 11.(순천시 공고 제2018-1499호)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을 “입장료, 이용료 면제” 로 하고, 각호 외 본문 중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는 시에 주소를 둔자는 50%를 감면한다” 를 “입장료, 이용료를 면제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만 면제한다.” 로 한다.

제6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제6조제5호(중전의 제4호) 단서 중 “상이등급 1급” 을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 으로 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5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정 안
<p>제6조(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 대금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는 시에 주소를 둔자는 50%를 감면한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3. (생략)</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p> <p>5. (생략)</p> <p>6. (생략)</p> <p>7. (생략)</p> <p>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p> <p>9.~11. (생략)</p> <p>제13조(주차이용자 준수사항) 관광용 시설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p>	<p>제6조(입장료, 이용료 면제)</p> <p>-----</p> <p>-----</p> <p>----<u>입장료, 이용료를 면제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만 면제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3. <u>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p> <p>-----</p> <p>-----</p> <p>----- <u>애국지사</u>와 <u>상</u> <u>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u>-----</p> <p>-----</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9.~11. (현행과 같음)</p> <p>제13조(주차이용자 준수사항) -----</p> <p>-----</p> <p>-----</p>



#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차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 전부 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조성과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 2.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주민대표 역할 수행 및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능·권한 부재</li> <li>• (개정)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등을 주민자치회 기능에 포함하고, 용어 정의 신설 및 수탁업무 확대</li> </ul>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운영(신설) (§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연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구성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li> </ul>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자격 확대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30명 이내로 제시. 위원자격을 해당 지역에 주민 및 사업장 주소를 둔 사람,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으로 한정</li> <li>• (개정) 20~50명으로 확대하고, 주요 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까지 위원 자격 부여</li> </ul>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지역대표 및 직능단체 추천, 주민 공모 등의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li> <li>• (개정)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참여 희망 주민대상을 우선적으로 공개모집 후 추첨 및 주민공동조직 등 기관 추천자도 추첨으로 선정가능(선정위원회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 위원회 근거 마련)</li> </ul>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가능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주민자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 보조를 위해 자원봉사자 배치할 수 있음</li> <li>• (개정)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배치가 가능</li> </ul>

구분	주요내용
<b>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b> (§12, 1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위원·주민의 자질함양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토록 규정</li> <li>• (개정) 위원 추천 전까지 <b>주민자치교육과정(4H이상) 이수 의무화, 외부 감사 선임, 사익추구 금지 의무조항 신설</b> 및 위반시 해촉사유에 포함</li> </ul>
<b>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및 분회 설치</b>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주민자치회 기능 효율적 수행 위해 분과위 둘 수 있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부재</li> <li>• (개정) <b>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필요시 분회 설치, 일반 주민도 분과위원으로 참여가능토록 신설</b></li> </ul>
<b>다른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신설)</b>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b>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주민자치업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b></li> </ul>
<b>주민자치회 종사자 신체상 피해 대책(신설)</b>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사무 수행하는 <b>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음</b></li> </ul>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 설치), 제28조(주민자치회 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 구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9. 12. ~ 2018. 10. 2.)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9. 7.(여성가족과-323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9. 6.(시민소통과-1008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9. 12.(전략기획과-1006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9. 12.(순천시 공고 제2018-1502호)

#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주요 기관·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율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퍼센트 이내
  2. 당해 읍면동 주요 기관 및 단체,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여부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

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 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 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 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

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시책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은 주민자치회 공모에 선정된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 제14조(주민총회) : 연 1회이상 개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정 상정
-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 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마을계획안 수립

###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자치위원 수당(사무관리비 예산 증가)
-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계획 수립 예산(사무관리비 예산 수반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332,000	-138,400	-48,400	-48,400	-48,400	-48,400
세입(a)						
세출(b)	332,000	138,400	48,400	48,400	48,400	48,4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332,000	138,400	48,400	48,400	48,400	48,400
국 비	-	-	-	-	-	-
도 비						
시 비	332,000	138,400	48,400	48,400	48,400	48,40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주민자치위원 수당
  - 대상 : 7개 읍면동 (위원 평균 30명, 주민자치위원회 대비 5명 증)

\* 중앙동 제외(주민자치회 2013년부터 시행)

- 사업기간 : 2019년 ~

- 산출액(2019년) : 8,400천원

- 산출근거 : 5명×2만원×12월×7개읍면동 = 8,400,000원

○ 주민총회 개최

- 대상 : 8개 읍면동

- 사업기간 : 2019년~

- 산출액(2019년) : 40,000천원

- 산출근거 : 5,000,000원 × 8개읍면동 = 40,000,000원

○ 마을계획 수립

- 대상 : 6개 읍면동 (중앙동, 덕연동 기수립)

- 사업기간 : 2019년

- 산출액(2019년) : 90,000천원

- 산출근거 : 15,000,000원 × 6개읍면동 = 90,0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경제관광국 시민소통과 과장

임영모 (☎ 749-5453)

마을공동체팀장

김미자 (☎ 749-5603)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10.5.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한대로 조문 내용 일부 정비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서 규정한대로 조문 정비
  - 제8조제3항 중 “5년으로 하고” 를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재 위탁 시” 로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와 상이하여 조례 삭제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 삭제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8. 28. ~ 9. 1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21.(여성가족과-3011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8. 22.(전략기획과-91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8. 28.(순천시 공고 제2018-1395호)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재 위탁 받아 운영 중인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재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② (생략)</p> <p>③ 위탁기간은 <u>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 위탁 결정을 할 수 있다.</u></p>	<p>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p>
<p>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u></li> <li>2. <u>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u></li> <li>3. <u>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u></li> </ol>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 등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lt;삭 제&gt;</p>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위반(불일치) 사항 보완 및 정비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세부시행지침 마련과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용어, 지원품목, 지원절차 등 변경사항 개정

## 2. 주요내용

- 제2, 8조 : 최저 가격 결정 기준 변경
  - 최근 3년 도매시장 가격 + 농진청 생산비 + 현지 생산비 참고 상반기 결정을 '최근 5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 하반기 결정'
- 제4조 : 상위법에 위반되는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10년 → 5년)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 2020년 11월 30일로 변경
- 제10조 : 차액지원 농축산물 지원 품목 확대(18개 → 25개)
  - 지원 품목 중 채소(배추, 무, 오이, 딸기, 미나리), 과수(단감, 매실) 추가
- 제11조 : 차액지원 대상 농가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청 대상 확대
  - 제1호 가목 : '해당 마을 이·통장의 확인을 거친 사람' 삭제
  - 제2호 나목 : 한우-5마리 이상 → 한우-2마리 이상 변경
- 제1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시 전문가, 특정성별위원 구성의 명확화 및 위원 구성 관련 용어 정비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1/3 이상 참여,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확화
  -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을 알기 쉽도록 용어 정비 등
- 제21조 : 긴급을 요하는 회의는 서면심의 가능하도록 내용 추가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9. 12. ~ 10. 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28.(여성가족과-3093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9. 8.(전략기획과-988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9. 12.(순천시 공고 제2018-1489호)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을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를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로 한다.

제8조 중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를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 하여 매년 하반기에”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고들빼기), 과수(배, 복숭아, 참다래)” 를 “채소(고추, 마늘, 양파, 고들빼기, 배추, 무, 오이, 딸기, 미나리), 과수(배, 복숭아, 참다래, 단감, 매실)” 로 한다.

제11조제1호 단서 “단, 해당 마을 이통장의 확인을 거친 사람”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5마리” 를 “2마리”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성 한다” 를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기획과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본문 중 “위촉직” 을 “위원회” 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 국·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기관·단체 대표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회의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최저가격”이란 <u>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u>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생산비”란 <u>농축산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u>을 말한다. 단, <u>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u></p> <p>3.~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u>----- -----.</p> <p>2.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p>3.~7.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p> <p>① ~ ③ (생략)</p> <p>④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u></p>	<p>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u></p>
<p>제8조(최저가격 결정) <u>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u></p>	<p>제8조(최저가격 결정) ----- -- <u>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하반기</u>----- -----</p>
<p>제10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p>	<p>제10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p>

현 행	개 정 안
<p>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순천시 내에서 경작·사육한 식량작물(보리, 밀, 옥수수, 감자, 콩), <u>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고들빼기)</u>, <u>과수(배, 복숭아, 참다래)</u>, <u>축산(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u>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1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p> <p>1.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단, <u>해당마을 이·통장의 확인을 거친 사람</u></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 계약재배 또는 계통출하 한 농가</p> <p>가. (생략)</p> <p>나. 한우, 육우, 젓소는 <u>5마리</u> 이상 사육하는 농가</p> <p>다.~라. (생략)</p> <p>제16조(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p>	<p>위) ① ----- ----- ----- <u>채소(고추, 마늘, 양파, 고들빼기, 배추, 무, 오이, 딸기, 미나리)</u>, <u>과수(배, 복숭아, 참다래, 단감, 매실)</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 ----- -----</p> <p>1. ----- ----- ----- <u>&lt;단서삭제&gt;</u></p> <p>2.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2마리</u> -----</p> <p>다.~라. (현행과 같음)</p> <p>제16조(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u>당연직</u> 위원은 <u>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기획과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한다.</u></p> <p>④ <u>위촉직</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lt;단서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u></li> <li>2. <u>순천시 내 농업협동조합장 중 1인</u></li> <li>3. (생략)</li> <li>4. <u>농·축산업 또는 경제 관련 교수</u></li> </ol> <p>⑤ <u>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u></p>	<p>-----</p> <p>---- <u>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③ ----- <u>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④ <u>위원회</u> -----</p> <p>----- <u>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 국·과장</u></li> <li>2.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기관단체 대표</u></li> </ol> <p style="text-align: right;"><u>&lt;삭제&gt;</u></p>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읍성 내 민박 시설 보수, 전통 민구 배치 및 침구류 세탁 등 전통적  
초가 환경 조성 및 개선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람료 인상(2015. 1. 1.) 후 인상 전보다 문화재보존관리비가 감소함에  
읍성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읍성보존을 위하여 보존관리비 지급률  
인상 필요

## 2. 주요내용

- 관람료 일부 개정(제5조 제1항) 및 매표 시간 명시(제7조 제4항)
- 무료 관람 범위 개정(제9조) 및 사용료 징수료 개정(제16조 제1항)
-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비율 조정(제23조 제2항)
- 낙안읍성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제26조 제2항)
- 읍성내 초가 민박 환경개선비 보조금 지원 신설
- 과태료 관련 상위법령상에 반하는 내용 개정(제32조 제2항)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8. 16. ~ 9. 5.)결과

-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부과·징수하도록 개정 반영
- 제26조(구성)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요청(여성가족과-27189호)
- **낙안읍성 보존회 제출 의견 및 반영 결과**
  - 제5조(관람료) 제1항 별표1에 따른 순천시민 “무료”를 순천시민 50% 할인
    - 시 정책사업 결정에 따라 **개정안대로 추진**
  - 제7조(매표) 제4항 관람권 매표시간 명시로 하절기 매표시간 “08:30~18:00”를 08:30~18:30으로 연장 요청
    - 하절기 일몰시간이 길어짐에 관람객 입장 수요를 위해 18:30까지 **연장 운영**
  - 제16조(사용료 징수) 시설(객사)사용료 “500,000원”을 300,000원으로 변경 요청
    - 객사는 주말 상설 공연 및 전통혼례 시에만 사용토록 하고 **제경비 상승으로 개정안대로 추진**
  -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제2항 제1항제8호의 사업비(문화재보존 관리비) “관람료 수입금의 40%이내”를 전년도 지급액 기준 매년 물가인상률 반영이나 관람료 수입금의 50%해당하는 금액과 시설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으로 변경 요청
    - 수요와 공급의 성격이 아니므로 물가인상률 반영은 어렵고 시민관람료 반영 및 현재(33%)보다 7%이상 인상한 **개정안 (40%)대로 시행**
  - 제26조(구성) 제2호 위원회 구성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보존회장을 비롯한 주민의 비율을 과반으로 한다로 명시
    - 낙안읍성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능으로 위촉직 7명중 전문직 위원이 3명이상 위촉되어야 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되 이후 주민을 1명 추가하여 3명으로 위촉
  - 제31조(초가민박 지원) 제2항 지원대상자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 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규정이나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박 또는 관광편의시설 사업자로 신고 로 변경

→ 관광진흥법 제6조의 관광편의시설 사업자는 한옥체험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하여 개정안에 반영

- 같은 조 제3항 초가민박 지원비 “5년간 3백만원으로 한다 “를 5년간 30백만원으로 한다로 요구.

→ 초가민박 지원비는 환경개선비로 건축물을 개축, 증축하는 시설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되, 지원기간 5년간을 3년간으로, 제4항 “5년 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 할 수 없고 최소 5년 이상 “을 3년 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할 수 없고 최소 3년 이상 으로 개정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7. 25.(여성가족과-2718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7. 23.(전략기획과-782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7. 23.(전략기획과-782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8. 16.(순천시 공고 제2018-30호)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관람권 대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구 분	대 표 시 간
1월, 11월~12월	09:00 ~ 17:30
2월~4월, 10월	09:00 ~ 18:00
5월~9월	08:30 ~ 18:30

제9조제4호 단서 중 “상이군경 1급”을 “상이군경 1급·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중”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을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회”를 “낙안읍성보존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100분의 33”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8장 벌칙”을 “제9장 벌칙”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 제33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 제34조로 한다.

제30조 다음에 “제8장 사업비 지원”을 삽입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초가민박 지원) ①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자신이 직접 초가 민박이나 한옥 체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전통 민구 배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주민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규정이나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민박 사업자 또는 관광편의시설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낙안읍성 내에서 초가민박이나 한옥체험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원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민박사업자당 3년간 3백만 원으로 한다.
-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 지원 사업이 완료된 후 3년 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할 수 없고 최소 3년 이상 초가 민박이나 한옥 체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사망, 질병, 재해로 인한 주택 전소 등의 사유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초가민박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현행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장 보칙”을 “제10장 보칙”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료입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에 대한 무료입장은 제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낙안읍성 관람 요금표**(조례 제5조 관련)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개인	4,000	2,500	1,500	
단체	3,000	2,000	1,000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

**사 용 요 금 표**(조례 제1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물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놀 이 마 당	1회	300,000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주간 09:00~18:00, 18:00~22:00)
객 사	1회	500,000	"
기타 시설물	1회	200,000	"

※ 객사는 상설공연 및 전통 혼례시만 시설 사용 가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대표) ① ~ ③ (생략)</p> <p>④ <u>관람권 대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u>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9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중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u>상이군경 1급</u>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p> <p>5. ~ 6. (생략)</p> <p>7. <u>“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u> 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p> <p>8. ~ 16. (생략)</p> <p>제17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회가</u> 주최하는 행사</p> <p>4. ~ 5. (생략)</p>	<p>제7조(대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다음과 같다.</u> ----- ----- -----</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padding: 5px;">구 분</th> <th style="padding: 5px;">대표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1월, 11월~12월</td> <td style="padding: 5px;">09:00~17:30</td> </tr> <tr> <td style="padding: 5px;">2월~4월, 10월</td> <td style="padding: 5px;">09:00~18: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5월~9월</td> <td style="padding: 5px;">08:30~18:30</td> </tr> </tbody> </table>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무료관람)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상이군경 1급·2급 또는 3급</u> ----- -----.</p> <p>5. ~ 6. (현행과 같음)</p> <p>7. <u>순천시에</u> 주소를 둔 사람</p> <p>8. ~ 16. (현행과 같음)</p> <p>제17조(사용료 면제)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낙안읍성보존회가</u> ----- -----</p> <p>4. ~ 5. (현행과 같음)</p>	구 분	대표시간	1월, 11월~12월	09:00~17:30	2월~4월, 10월	09:00~18:00	5월~9월	08:30~18:30
구 분	대표시간								
1월, 11월~12월	09:00~17:30								
2월~4월, 10월	09:00~18:00								
5월~9월	08:30~18:30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생략)</p> <p>② 제1항제8호의 사업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관람료 수입금의 <u>100분의 33</u>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100분의 40</u> ----- -----</p>
<p>제26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3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3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u>10분의 6</u>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lt;삽 입&gt;</p>	<p><u>제8장 사업비 지원</u></p>
<p>&lt;신 설&gt;</p>	<p>제31조(초가민박 지원) ① <u>낙안읍성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자신이 직접 초가 민박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전통 민구 배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주민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규정이나</u></p>

현 행	개 정 안
<p>제8장 별 칙</p> <p>제31조(과태료) (생 략)</p> <p>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④ (생 략)</p> <p>제9장 보 칙</p> <p>제33조(시행규칙) (생략)</p>	<p>「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u>농어촌 민박 사업자 또는 관광편의시설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낙안읍성 내에서  초가민박이나 한옥체험업을 직접 운영  하여야 한다.</u></p> <p>③ 지원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민박사업  자당 3년간 3백만원으로 한다.</p> <p>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 지  원 사업이 완료된 후 3년 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할 수 없고 최소 3  년 이상 초가 민박이나 한옥 체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사망, 질병, 재해  로 인한 주택전소 등의 사유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⑤ 초가민박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장 별 칙</p> <p>제32조(과태료) (현행 제31조와 같음)</p> <p>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10장 보 칙</p> <p>제34조(시행규칙) (현행 제33조와 같음)</p>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31조(초가 민박 지원)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초가 민박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전통 민구 배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주민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제1항제8호의 사업비(문화재보존관리비 및 자녀학자금 일부 지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읍성내 초가 민박 시설개보수 및 전통 민구 배치 등 환경개선 사업비 일부 지원
  - 기 간 : 2018. ~ 2022.(5년간)
  - 지원기준 : 1민박당 총사업비의 50% 지원(최고 3백만원 이내)
  - ※ 연간 10민박 지원대상자 선정
- 문화재보존관리비 및 자녀학자금 일부 지원비를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이내 지급(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 관람료)
  - ※ 2017. 7. 1.~ 2018. 6. 30. 관람료를 2018년 관람료로 산정 후 연간 5% 증액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7,288,938	1,310,831	1,377,873	1,448,266	1,537,180	1,614,788
세입 (a)	관람료	7,966,599	1,441,754	1,513,841	1,589,534	1,669,010	1,752,460
	소 계	677,661	130,923	135,968	141,268	131,830	137,672
	환경개선 지원	120,000	30,000	30,000	30,000	15,000	15,000
세출 (b)	보존관리비 지원	557,661	100,923	105,968	111,268	116,830	122,672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677,661	130,923	135,968	141,268	131,830	137,672
국 비						
도 비						
시 비	677,661	130,923	135,968	141,268	131,830	137,672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 초가민박 환경개선비 지원

- 산출액 : 120,000천원(2018. 7. ~ 2022. 12.)
- 산출근거 : 1회 10민박 지원, 한도액 3백만원 기준 산정  
 ※ 10민박\*3,000,000원\*1회=30,000,000원(4차년도부터는 5민박)

##### ○ 문화재보존관리비 지원

- 산 출 액 : 557,661천원(2018년 ~ 2022년)
- 산출근거 : (연도별 관람료\*40%)-(연도별 관람료\*33%)  
 ※ 2018년 경우 : (1,441,754천원\*40%)-(1,441,754천원\*33%)
- 관리비 산정을 위한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년 (2017.7.1~2018.6.30.)	2017년 (2016.11.1~2017.10.31.)	2016년 (2015.11.1~2016.10.31.)	2015년 (2014.11.1~2015.10.31.)
관람객	1,009,322	1,047,189	830,625	827,149
관람료	1,441,754	1,555,063	1,430,719	1,454,432
유료율	42%	43.4%	53.7%	62.9%

##### - 순천시민 관람료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년 (2017.7.1~2018.6.30.)	2017년 (2016.11.1~2017.10.31.)	2016년 (2015.11.1~2016.10.31.)	2015년 (2014.11.1~2015.10.31.)
관람객	39,850	43,901	54,102	58,831
관람료	68,885	76,594	92,643	99,429

※ 시민 무료는 제외(산정 불가)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낙안읍성	성 장	강병일 (☎ 749-8835)
	관리팀장	윤선옥 (☎ 749-8836)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22호
----------	--------

발의연월일 : 2018. 10. 4.

발 의 자 : 김미연, 남정옥, 오광묵,  
최병배, 김영진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 정책 결정사항 등의 선거를 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제6조(지원 범위) 및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에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지원 범위)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③ 제6조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투표 비용은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투표에 대해 지원하며, 제9조의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6조(지원 범위) ① (현행 본문과 같음)</p> <p>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② (생략)</p> <p>&lt;신설&gt;</p>	<p>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6조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투표 비용은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투표에 대해 지원하며, 제9조의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p>
<p>③ ~ ④ (생략)</p>	<p>④ ~ ⑤ (현행 제3항 ~ 제4항과 같음)</p>

#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폐지이유

- 순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인증서 반납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음
-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인증서 반납(2018. 3. 16.)

## 2. 주요내용

- 현행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 3. 폐지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8.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8. 3.(전략기획과-8345)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8. 16.(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상수도과 공고 제2018-3호)

##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3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10. 5.

## 1. 개정이유

-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순천시민의 입장료 무료, 관람객들의 불편 해소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순천만국가정원 관람료 일부를 개정하고,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내용 삭제, 순천시민 무료 및 상위법 불부합 관련 관람료, 관람료 면제, 관람차 내용 일부 개정
  - 제4조(관람료 등) : 제2항 삭제, 별표 1 개정
  - 제5조(관람료 면제) : 별표 2 개정
  - 제20조(관람차) : 별표 4 개정
- 입장제한 :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예외 내용 일부 개정
  - 제7조(입장제한) 제6호 : ‘시가 추진하는 동물영화제 등 특별기간’ 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변경
-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 구성 내용 일부 개정
  - 제23조 제1항 : 위원회는 ‘13명 이내’ 를 ‘15명 이내’ 로 변경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입장료 등)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9. 12. ~ 10. 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9. 7.(여성가족과-3238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9. 11.(전략기획과-997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9. 12.(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공고 제2018-11호)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같은 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시가 추진하는 동물영화제 등 특별기간이나 시각장애인의 보조조건은 예외로 한다)”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각장애인의 보조조건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13명”을 “15명”으로 하고,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천시민 1년권 관람료 환불)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1년 회원권을 발급받은 순천시민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관람료(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무료	무료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비 고 >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 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 관련)**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만, 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및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자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10.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순천시민이나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다른 지역 거주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2.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1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4.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이 용 료(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27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별표 1]

**관 략 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무료	무료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비 고 >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 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관련)**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만,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및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자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10.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순천시민이나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다른 지역 거주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2.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1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4.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이 용 료(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20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랑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어린이	2,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고>

1. “어린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관람료 등)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을 관람료 수입으로 하고,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 (다만, 시가 추진하는 동물영화제 등 특별기간이나 시각장애인의 보조조건은 예외로 한다)</u></p> <p>7. ~ 8. (생략)</p>	<p>제4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② (중전 제3항과 같음)</p> <p>③ (중전 제4항과 같음)</p> <p>④ (중전 제5항과 같음)</p> <p>⑤ (중전 제6항과 같음)</p> <p>⑥ (중전 제7항과 같음)</p> <p>제7조(입장제한)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반려동물-----</u>. 다만,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각장애인의 보조조건은 예외로 한다.</u></p> <p>7. ~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3명</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u>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p> <p>② ~ ③ (생략)</p>	<p>제23조(구성) ① ----- ----- <u>15명</u> ----- <u>구성</u>하 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 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b>관람료(제4조 관련)</b>				<b>관람료(제4조 관련)</b>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순천시민	무료	무료	무료
1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li> <li>순천시민 : 10,000원</li> </ul>			1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li> </ul>		
<p>※ 순천시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p> <p>※ 성인 개인,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3,000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제공</p>				<p>※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p>			
<p>&lt;비교&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li> <li>“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li> <li>“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li> <li>“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li> <li>“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li> </ol>				<p>&lt;비교&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li> <li>“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li> <li>“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li> <li>“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li> <li>“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li> </ol>			

현행	개정안
<p>[별표 2] <b>관람료 면제(제5조 관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li> <li>2. <u>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u></li> <li>3. <u>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u></li> <li>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li> <li>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li> <li>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li> <li>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li> <li>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li> <li>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li> <li>1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중”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li> <li>11.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li> <li>12. <u>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u></li> <li>13.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별표 2] <b>관람료 면제(제5조 관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li> <li>2. <u>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u></li> <li>3. 순천시에 주소를 둔 <u>사람</u></li> <li>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li> <li>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li> <li>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li> <li>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li> <li>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li> <li>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li> <li>10.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u>순천시민이나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다른 지역 거주자</u></li> <li>11.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u></li> <li>12. <u>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u></li> <li>1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li> <li>14.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b>이 용 료 (제 20조 관 련)</b>				[별표 4] <b>이 용 료 (제 20조 관 련)</b>			
구 분		이용료	비고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램 차	성 인	3,000원		관 램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청소년		
	어린이	2,000원			어린이	2,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p>&lt;비고&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란 4세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li> <li>“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li> <li>“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li> </ol>				<p>&lt;비고&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li> <li>“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li> <li>“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li> </ol>			

현 행	개 정 안
<p>(다른 조례의 개정)</p> <p>□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을 관람료 수입으로 하고,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생략)</p>	<p>□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③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⑤ (현행 제6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7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	-------

[별표 1]

**관 랑 료 (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li> <li>• <u>순천시민 : 10,000원</u></li> </ul>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함

※ 성인 개인,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3,000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제공

<비고>

1.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1]

**관 랑 료 (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무료	무료	무료
1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li> </ul>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고>

1.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과 그 수행자</li> <li>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li> <li>3.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li> <li>4.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li> <li>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li> <li>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li> <li>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li> <li>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li> <li>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li> <li>10.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li> <li>1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li> <li>1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li> <li>13.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li> <li>14.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초·중·고 교원(20명당 1명)</li> <li>15.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관람료 면제(제6조 관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li> <li>2.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li> <li>3.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li> <li>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li> <li>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li> <li>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li> <li>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li> <li>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li> <li>9.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li> <li>10.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순천시민이나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다른 지역 거주자</li> <li>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li> <li>12.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li> <li>1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li> <li>14.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u>이 용 료</u> (제 27조 관련)				[별표 5] <u>이 용 료</u> (제 27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구 분		이용료	비고
순 천 만 생태체험선	성 인	20세 이상	7,000원	순 천 만 생태체험선	성 인	만 19세 이상	7,000원
	청소년	14세 ~ 19세	3,000원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3,000원
	어린이	4세 ~ 13세	2,000원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2,000원

#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851호
----------	--------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이영란, 오광묵, 강형구,  
장숙희, 최병배, 김미연,  
박혜정, 김미애 의원

## 1. 제안이유

가.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며 상처임. 여순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요 우리 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임.

나. 순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에서 이 중대한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지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음.

- 지난 1998. 10. 28. 순천시의회 제42회 임시회에서 박광호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안”이 채택되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고, 2001. 6. 28. 순천시의회 제69회 정례회(정병희의원 발의), 2005. 7. 11. 순천시의회 제107회 정례회(윤병철의원 발의), 2013. 5. 27. 순천시의회 제175회 임시회(이창용의원 발의), 2016. 11. 1. 순천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신민호의원 발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음.

다. 국회에서도 김충조의원 등 40명의 국회의원이 2001. 4. 6.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2011. 1. 31. 김충조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이, 2013. 2. 28. 김성곤의원 등 16명 국회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전부 자동폐기되었으며, 2018. 10. 1. 이용주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음.

라. 2005년 5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5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 조사해 발표한 여순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를 통해 다음 내용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 위령사업 지원 권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권고

-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사망일시·장소가 잘못 기재되어있고, 특히 희생자의 유복자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입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권고

- 국가는 본 사건의 민간인 희생관련 내용을 정부의 공식 간행물,

역사교과서, 군·경찰 발간 자체 간행물, 순천지역 향토사 등에 추가하거나 잘못 기술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교과서 국사와 검인정 한국근·현대사등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등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술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평화인권교육 강화 권고

- 국가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지역민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물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만 기다리고 있을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관련 무고한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규정 정의(안 제1조~제2조)
- 다. 지원기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아 지역민 희생자가 순천시에 요구하는 사항, 또는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
- 라.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피해자 조사, 유해발굴, 위령탑 및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_)

3.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참고자료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2년 동안의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등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입증 받은 지역민 희생자가 순천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순천시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1.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2.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유적지 정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